

성묘 앞두고 파헤쳐진 아버지 유골... ‘10년 이하 징역 중범죄’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청원인 A씨가 공개한 사진. 파묘로 인해 일부 땅의 색깔이 다르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에 성묘를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이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소포로 보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왔습니다. 청원인은 “90대 노모께서는 아버지 유골 소포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몸져누워계시고 제 가족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받았다”며 “설날은 코앞에 다

가오는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형사법전문가는 “분묘발굴죄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중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불법으로 파묘된 경우 형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제12장에 ‘신앙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이나 제사등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누군가 허락 없이 선친의 묘를 파헤친 경우는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묘발굴죄보다 2배가량 형이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묘발굴죄나 분묘발굴 후 유골 손괴죄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묘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면 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하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묘를 이장하겠다는 별도의 특약 없이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때도 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만들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장사법 시행 전인 200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분묘를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묘를 파헤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법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이를 파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묘지 연고자는 해당 토지 사용에 관

한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분묘를 담당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장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의 미숙한 대처로 토지 소유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청원인부친의 파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개장을 위해 관련 서류에 위·변조가 있었다면 공문서 위변조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땅 위에 권리 없는 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파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 개장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